기자재선정위원회규정 3-1-29

규정번호 3-1-29
제정일자 2017.10.25
최근개정 2018.12.10
개정차수 2차 개정
관리부서 산학협력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용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선정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기자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기획실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분야 교직원을 위촉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12.10.)

제4조(위원장 및 직무)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12.10.)

제5조(회의소집)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는 위원정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용기자재 확충 계획의 수립
2. 교육용기자재 구입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용기자재의 취득,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4. 교육용기자재 활용도 및 성과평가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9조(업무관리 및 간사) 위원회의 업무는 산학협력처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업무부서 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8.08.27.)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